

「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1월 6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월 7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1월 15일

제2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도시건설국장 변상용

나. 제안이유

- 구미 캠핑장 운영 수지율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 
화를 도모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인용 자치법규 제명 정비(안 제15조제2항)
- 캠핑장 사용료 변경(안 별표 1)

구 분		사용시간	요 금 (원)			비 고
명 칭	크 기		비수기(성수기제외)		성수기 (7월~8월)	
			주중	주말		
카 라 반	8m×12m (최대6인)	1동/1일	100,000	130,000	170,000	전기사용료 포 함
오토캠핑	9m×9m (최대8인)	1면/1일	30,000	30,000	40,000	
일반캠핑	4m×5m (최대6인)	1면/1일	25,000	25,000	30,000	
평 상	3m×3m (최대8인)	1개소/1일	15,000	15,000	20,000	전기사용 불가

## 라. 참고사항

### 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

### ○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### ○ 기 타 :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인용 자치법규 제명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였음. 또한, 시설사용료 인상은 운영 수익성을 개선하고 수지율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.

### ○ 검토 결과,

- 다만, 관련부서에서는 구미캠핑장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수지율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 외에도 홍보를 강

화하고, 관외 이용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